

여신거래약정서 (기업용)

본인은 홍콩상하이은행(이하 “은행” 이라 한다)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“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관련 수신거래약관을 포함한다)” 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다음 각 조항을 확인한다.

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귀중
본 인

년 월 일

명 판	법인인감

주 소:

제 1조 거래조건

거래조건은 다음과 같다. (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“□” 내에 “√” 표시한다)

여신과목(여신종류)		거래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한도거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별거래
여신(한도)금액	금		
여신개시일	년 월 일	여신기간만료일	년 월 일(1회전기간: 개월)
이자율 등	연 % 단, 기간연장으로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마다 연 %씩 가산한다	지연배상금율	연 %
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	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.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, 상관습에 따른다.		
여신실행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한다.		
상환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여신개시일로부터 ()년()개월동안 거치하고, ()년()월()일부터 매 ()개월마다 분할상환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최종의 대출실행후 최초 도래하는 대출개시해당일로부터 매 ()개월마다 분할상환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유로이 상환하되, 1회전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,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.		
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최초이자 는 여신개시일에,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에 선지급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최초이자 는 여신개시일로부터 ()개월 이내에,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로부터 ()개월 이내에 지급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여신기간 만료일에 지급한다.		
상계특약	적립신탁대출에 대하여 관련 월적립금이 계속하여 4회이상 연체되는 경우 여신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관련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기로 한다.		

제 2 조 지연배상금

- ① 이자·분할상환금·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.
-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그 때부터 차용금잔액에 대하여,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.
- ③ 적립신탁대출의 경우, 상계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, 상계후에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.
- ④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,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,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.

제 3 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

- 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, 채무총액은 최종의 여신실행후에 확정되며, 확정방법은 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한다.
- 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, 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기로 한다.

제 4 조 감액, 정지

한도거래 및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, 금융사정의 변동, 채권보전상 필요있을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 여신(한도)금액을 줄이거나,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금액은 곧 갚기로 한다.

제 5 조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

- ①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,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 기본계좌 및 당좌예금(이하 “모계좌” 라 한다)에 입금된 자금(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,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한다)은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.
- ②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,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,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한다.
- ③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, 은행은 재량에 따라 제1조의 여신(한도)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곧 갚기로 한다.
- ④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,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여신(한도)금액 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, 이 경우 한도 초과한 금액은 곧 갚기로 한다.
- ⑤ 당좌대출의 경우,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어음·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,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한다.
- ⑥ 당좌대출의 경우, 제4조에 의한 감액·정지로 인하여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어음·수표가 지급거절되더라도 이의 없기로 한다.
- ⑦ 당좌대출의 경우, 은행은 재량에 따라 본인이 여신기간만료일 전에 발행한 어음·수표를 여신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된다.

제 6 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

한도거래 및 외화대출의 경우 제1조의 여신(한도)금액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.

제 7 조 인지세의 부담

-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한다.

제 8 조 약속어음 제공의무와 보충권 수여

- ① 어음대출의 경우, 액면과 지급기일이 기재된 약속어음 1매와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 1매를 연대보증인과 공동발행하여 은행에 제공하기로 한다.
- ② 한도거래 및 1년초과대출의 경우,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1매를 연대보증인과 공동발행하여 은행에 제공하기로 한다.
- ③ 은행은, 본인이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전항의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행사할 수 있기로 한다.
- ④ 전항에 의한 보충권 행사시 어음금액은 원금, 이자, 지연배상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내로 한다.

제 9 조 상환통화 및 환율

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,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 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한다.

제 10 조 담보·보험

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,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·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,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다.

제 11 조 담보권 설정

- ①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은 아래에 표시한 예금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(통장)를 인도한다.
-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·수익권(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한다)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·수익의 수익권, 특별장려금, 법정장려금 등에 미친다.
-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·개서·갱신·분할·병합·증액·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, 그 목적이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한다.
-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다.

■ 질권의 목적인 예금등의 표시

종별	증서기번호 계좌번호	명의인 또는 위탁자	금액 (계약액)	. . .까지 입금누계액	증서일자	지급기일

제 12 조 (기타 특약사항)

※ 다음 장에 첨부된 어음거래약정서가 추가로 적용됨을 확인한다.

명 관	법인인감
-----	------

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.

본인(명관)	법인인감
연대보증인(명관)	법인인감

수입
인지